G - 106 - 2013

실리카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

2013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숭실대학교 서상호
- 제·개정 경과
- 2013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관련규격 및 자료
- INDG 463, Control of exposure to silica dust, HSE, 2013
- G 404, Health surveillance for those exposed to respirable crystalline silica(실리카 분진), HSE, 2013
- CIS 36, Construction dust, HSE, 2013
- CIS 54, Dust control on cut-off saws used for stone or concrete cutting, HSE, 2012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3년 11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G - 106 - 2013

실리카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실리카를 함유한 물질 취급 작업 시 발생하는 결정형 분진 중 입자크기가 작은 호흡성 분진은 건강상의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리카 분진을 기계적으로 저감시키는 기술적 방안 및 작업 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실리카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실리카(Silica)"란 콘크리트, 바위, 벽돌, 점토 같은 물질에 함유되어 있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말하며 이산화규소 또는 규토라고 한다.
- (나) "실리카 분진(Silica dust)"이란 실리카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가공작업할 때 생기는 분진 말한다.
- (다) "호흡성 결정형 실리카(Respirable Crystalline Silica, RCS)"란 실리카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작업할 때 발생하는 결정 형태의 호흡성 유리규산 분진을 말한다.
- (라) "호흡용 보호구"란 작업환경 중에 존재하는 가스, 증기, 미스트, 분진 등의 유해 물질이 근로자의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보 호구를 말한다.

G - 106 - 2013

- (마) "블라스팅(Blasting)"이란 연마제를 고압으로 분사시켜 재료 표면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실리카 분진의 발생 유발 작업과 관련 직업병

4.1. 재료별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의 함유량

재료별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의 함유량은 <표 1>과 같다.

재료	호흡성 결정형 실리카의 함유량
사암	70 ~ 90%
콘크리트, 모르타르	25 ~ 70%
타일	30 ~ 45%
화강암	20 ~ 45%
슬레이트(Slate)	20 ~ 40%
벽돌	~ 30%
석회암	2%
대리석	2%

4.2. 실리카 분진과 관련된 질병

(1) 규폐증(Silicosis)

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폐 감염의 위험이 커지는 폐질환

(2) 만성 폐쇄성 폐질환(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, COPD)

기관지염과 폐기종이 수반되면서 기침과 만성질환으로 발전되어 호흡 곤란을 야기하는 폐질환의 한 종류

G - 106 - 2013

(3) 폐암(Lung cancer)

실리카 분진에 장기 노출됨으로써 발생 가능한 중증 폐종양

- 4.3. 실리카 분진에 노출 위험이 큰 작업의 종류
 - (1) 건설 및 폭파
 - (2) 채석
 - (3) 슬레이트 가공
 - (4) 도기, 세라믹, 벽돌, 타일 제조
 - (5) 주조
 - (6) 내화벽돌 제조 및 가공
 - (7) 콘크리트 생산
 - (8) 석공작업
 - (9) 연삭, 연마, 절삭
 - (10) 천공, 분쇄
 - (11) 재료의 혼합과 운반
- 4.4. 실리카 분진이 발생 가능한 작업장
 - (1) 실리카의 누출 우려가 많은 작업장
 - (2) 실리카 분진을 물 세척보다 건식 세척하는 작업장

G - 106 - 2013

- (3) 작업복, 작업장 바닥과 벽이 실리카 분진으로 오염된 작업장
- (4) 이동 차량이나 작업자에 의해 실리카 분진이 옮겨져서 쌓이는 작업장
- (5) 작업 중 공기 중에 실리카 분진이 남아 있는 작업장

5. 실리카 분진의 관리

5.1. 작업장 관리

(1) 실리카 분진을 가압된 물 분사기 등으로 세척

가능하면 호스나 휴대용 가압 물통을 이용한다. 이때 분사기의 분출 유량은 최소 $0.5\ l/min$ 으로 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. 절삭 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물 분사기 세척보다는 환기장치를 이용한 실리카 분진 배출이 바람직하다.

- (2) 적합한 방진 마스크의 착용
- (3) 기계류의 유지관리
- (가) 물 분사기를 이용하여 실리카 분진이 묻어 있는 기계의 세척, 특히 절삭 톱의 교환 시는 물 세척을 항상 실행
- (나) 마모된 절삭 날을 교체하여 절삭시간을 감소
- (다) 호흡용 보호구의 검사 및 교환

5.2. 작업 외의 사항 관리

분진 발생되는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 이외의 작업자에게 피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.

G - 106 - 2013

- (1) 작업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한다.
- (2) 작업자들이 순환 작업하도록 한다.
- (3) 분진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친다.
- (4) 실리카 분진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장치를 설치한다.
- (5) 실리카 분진이 쉽게 묻는 작업복은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.

6. 작업 유형별 실리카 분진의 저감 방안

- (1) 콘크리트 보도 연석, 블록 혹은 포석을 절단 톱으로 절단하는 작업
- (가) 설계 및 배치 시 절단 횟수를 줄인다.
- (나) 블록 파쇄기(Block splitter) 같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장비를 사용한다.
- (다) 절단 장소 내에서 재료 운반
- (2) 콘크리트 홈 내기와 모르타르 긁어모으기 작업
- (가) 설계 및 배치 단계에서 작업의 필요성을 줄인다.
- (나) 홈 내기 같은 작업방법을 지양한다.
- (3) 절단 톱으로 지붕 타일 절단작업
- (가) 섬유질 시멘트 슬레이트는 손으로 절단한다.
- (나) 절단 부위를 정확히 재단한다.
- (다) 지붕의 골을 최소화 한다.

G - 106 - 2013

- (4) 돌을 다듬거나 연삭하는 작업
- (가) 가압된 물 분사기를 사용한다.
- (나) 압력 세척법을 사용한다.
- (다) 망사를 덮어씌운다.
- (5) 수동 회전식 동력공구 사용 천공작업
- (가) 작업이 필요한 구멍의 수를 제한한다.
- (나) 설계 및 계획 시 재료를 고정시켜 나사를 낸다.
- (6) 밀폐장소에서 수동 파쇄기(Hand-held breaker) 작업
- (가)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 파쇄량을 제한한다.
- (나) 블라스팅, 분쇄, 절단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.
- (다) 원격 해체 방법(Remote controlled demolition)을 사용한다.
- (라) 수력 해체 방법(Hydrodemolition)을 사용한다.
- (7) 연마 압력 블라스팅(Abrasive pressure blasting)작업
- (가) 가압된 물 분사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.
- (나) 실리카가 없는 연마제 사용
- (8) 간이 해체 작업
- (가) 작업장에 잔류하는 근로자의 수를 제한한다.

G - 106 - 2013

- (나) 분진 확산 방지 막을 설치한다.
- (9) 분진과 잡석 혹은 부스러기 제거 작업
- (가) 설계 및 계획 시 폐기물의 양을 줄인다.
- (나)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빈도를 줄인다.
- (다) 잡석과 부스러기가 만들어질 때 분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.

7. 호흡용 보호구 사용 시 고려사항과 유지관리

7.1. 고려사항

실리카 분진 흡입을 방지하지 위한 호흡용 보호구 사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1) 분진의 유형과 발생량에 적합한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한다.
- (2) 근로자가 착용하는 다른 개인보호구와 병행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.
- (3) 호흡용 보호구는 착용감이 좋아야 한다.

7.2. 관리

- (1) 필터 혹은 일회용 마스크는 정기적으로 교환한다.
- (2) 호흡용 보호구는 청결하고 분진이 없는 곳에 보관한다.
- (3) 세척 시에는 진공청소기 혹은 물걸레를 사용한다. 마른 걸레 사용은 불량한 세척상태가 되기 쉽다.
- (4) 작업에 적절한 유형의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.

G - 106 - 2013

- (5) 근로자의 얼굴에 잘 맞는 크기의 방진 마스크를 사전 시험하여 선택한다. 이때 근로자는 면도한 상태여야 한다.
- (6) 방진 마스크가 잘 맞지 않거나 다른 결함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하게 한다.
- (7) 적절한 마스크 사용법에 대해 사전 숙지한다.
- (8) 옷에 묻은 분진은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제거한다.

8. 실리카 분진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역할

- (1)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.
- (2) 위험성 평가의 결과는 기록 보존하고,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린다.
- (3) 작업 시 사용하는 물질과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에 실리카 분진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한다.
- (4) 실리카 저 함유 물질로의 대체를 고려한다.
- (5) 실리카 분진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적절한 작업방법을 강구하여 실행한다.
- (6)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한다.
- (7)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가 적절히 사용되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한다.
- (8) 실리카 분진에 의한 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, 또는 실리카 분진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.
- (9) 적절한 범위의 감독을 실행한다.
- (10)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, 특히 폐기능 검사와 흉부 X-

G - 106 - 2013

레이 촬영 등을 주기적으로 받게 한다.

9. 근로자의 의무

- (1) 실리카 분진 노출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른다.
- (2) 장비에 장착하는 분진 배출장치(On-tool-extraction) 등과 같은 적절한 장치를 사용한다.
- (3) 적절한 보호복과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.

10. 건강보호조치

10.1. 일반사항

- (1) 건강보호조치는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으로, 호흡 문제 혹은 폐질환을 초기에 찾아내어 분진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.
- (2) 건강보호조치 프로그램에는 산업위생기사, 의사 혹은 간호사와 같은 보건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3) 근로자가 실리카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환경에서 일하게 될 때는 건강보호조치를 실행해야 한다.
- (4) 실리카 분진에 노출 위험이 낮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건강보호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5) 규폐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규폐증과 그로 인한 폐질환 발생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건강보호조치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고 그 적절성도 검토되어야 한다.
- (6) 보건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호흡문제가 제기되면 X-레이 등 필요한 검진을 한다.

G - 106 - 2013

(7) 건강보호조치는 분진에 노출 되는데 대한 대안 조치가 아니라 필수적인 예방조치이다.

10.2. 기록

기록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실리카 노출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
- (2)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공정 그리고 노출 빈도
- (3) 제공된 보호조치
- (4) 작업 개시일
- (5) 작업의 적절성

10.3. 교육훈련내용

실리카 분진 발생 가능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. 그 교육 훈련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실리카 분진의 위험성과 분진 흡입이 초래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
- (2) 실리카 분진을 억제하는 방법과 작업상태 점검
- (3) 장비의 청결하고 양호한 유지 방법
- (4)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방법과 유지관리
- (5) 분진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상 징후 발견 시 대처 방법